

# 방송통신발전기금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

제정 2011. 6. 27.  
개정 2012. 7. 23.  
개정 2013. 6. 12.  
개정 2014. 4. 28.  
개정 2015. 10. 6.  
개정 2016. 5. 9.  
개정 2017. 4. 25.  
개정 2017. 12. 13.  
개정 2019. 6. 27.  
개정 2020. 12. 22.  
개정 2021. 12. 31.  
개정 2022. 8. 5.  
개정 2023. 11. 28.  
개정 2024. 10. 28.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 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직접투자”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투자상품의 종류, 매매의 시기와 방법 등 투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자산운용행위를 말한다.
- “간접투자”란 진흥원이 투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투자에 관해서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등 자산운용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하는 자산운용행위를 말한다.
- “외부위탁기관”이란 간접투자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자산운용 전문기관을 말한다.
- “금융기관”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기관(체신관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은행권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체신관서를 말한다.

제3조(운용원칙) ① 진흥원은 금융기관에 자산을 운용할 때는 자산운용계획의 운용자산 규모, 자산배분 정책, 자산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자산운용 시 별표 1의 「자산운용 위임·전결기준」에 따른다.

③ 자산운용상품은 아래 각호를 기초하여 결정하고 구체적인 금융상품 선택기준은 별표 2의 「금융상품 선택 기준」에 따른다.

1. 단기자금은 적정유동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 전망 등을 감안하여 위험을 고려한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선택한다.

2. 중장기자금은 자산배분안, 허용한도, 만기구조, 금융시장 전망 등을 감안하여 위험을 고려한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선택한다.

3. 금융상품은 환금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한다.

④ 진흥원은 금융기관에 자산을 운용할 때는 해당 금융기관 본점 또는 본점이 지정한 광주·전남지역의 지점을 통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점이 없는 체신관서 및 본점에서 운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취급하지 않거나 법인에 대하여 직접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장 금융기관의 선정

제4조(은행권 금융기관 평가기준 등) ① 진흥원은 매년 1회 이상 별표 3의 「은행권 금융기관 평가기준」에 따라 은행권 금융기관을 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총점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융기관의 총점별 순서로 은행권 금융기관을 A, B, C 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는 별표 4의 「은행권 금융기관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에 따른다. 다만, 체신관서는 평가없이 A등급을 부여하고, 특수은행은 평가순위 상위 30%의 경우 A등급, 그 이하의 경우 B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권 금융기관에는 자산을 운용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른 총점순위 상위 80% 아래에 속하는 금융기관

2.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인 금융기관

3. 신용등급이 AA- 미만인 금융기관

4. 고정 이하 여신비율이 3% 이상인 금융기관
5. 기타 안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

제5조(증권회사 평가기준 등) ① 진흥원은 매년 1회 이상 별표 5의 「증권회사 평가기준」에 따라 증권회사를 평가하여 증권회사별 총점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한 총점별 순서로 증권회사를 A, B, C 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는 별표 6의 「증권회사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회사에는 자산을 운용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른 총점순위 상위 80% 아래에 속하는 증권회사
2. 신용등급 A- 미만의 증권회사
3. 기타 안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

제6조(자산운용회사 평가기준 등) ① 진흥원은 매년 1회 이상 별표 7의 「자산운용회사 평가기준」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를 평가하여 자산운용회사별 총점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한 총점별 순서로 자산운용회사를 A, B, C 급으로 분류하며,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는 별표 8의 「자산운용회사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운용회사에는 자산을 운용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른 총점순위 상위 50% 아래의 자산운용회사
2. 집합투자기구(펀드) 설정규모 5,000억 원 미만의 자산운용회사
3. 전문사모자산운용사
4. 기타 안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

제7조(직접투자) ① 진흥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단기자금 및 확정금리형 상품을 운용할 때에는 거래상대방, 상품유형, 편입자산 등의 위험을 고려하여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을 선정한다. 다만, 조기의 현금 유동성에 대비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현금성 자산 계좌에 추가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50억 원 이하 자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진흥원은 정기예금, 환매조건부 채권, 양도성 예금증서, 채무증권, MMT, MMW 등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품 선정 시점에 금융 기관별 판매상품 유형별 금리 수준과 안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간접투자) ① 진흥원은 외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자산운용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외부위탁기관에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판매사를 통해 상품을 제안받는 경우 해당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은 제4조부터 제6조에서 선정된 금융기관에 한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9조(외부위탁기관의 선정) ① 외부위탁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외부위탁기관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평가와 제안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술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외부위탁기관의 선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평가에 따른 평가점수를 40%, 별표 9의 「외부위탁기관 선정기준」에 따른 점수를 60%로 반영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자산운용지침 제7.3조 8항의 대체투자 등의 경우에는 자산운용 위원회에서 정하는 선정기준을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구술심사를 병행하는 경우 심사위원 전원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한 외부위탁기관은 제외한다. ⑤ 진흥원은 외부위탁기관을 선정하려면 운용하고자 하는 자산운용 유형, 상품 유형, 상품운용의 주요 내용, 운용예정금액, 제안자격, 제안서 제출기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금융기관별 자산운용한도 및 외부위탁기관 선정의 특례) ①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은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장의 결재를 받아 금융기관별 운용한도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안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
2. 특정 금융기관에서만 운용하는 상품에 예탁하는 경우
3. 조기의 현금 소요에 대비하여 10억원 이하의 자산을 기준에 운용중인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자산운용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금융상품에 기준 예탁금액의 50% 이내에서 추가 예탁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자산의 보호나 예상되는 손실의 방지 등을 위하여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못 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펀드평가회사 등의 공개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선정한 우수한 금융상품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7. 연기금투자풀에 운용하는 상품에 예탁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의2(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의 평가 및 자산배분) ① 진흥원은 연기금 투자풀에 대한 신규 예치 또는 환매의 경우, 별표 10의 「연기금투자풀 주간 운용사 평가 및 배분기준」에 따라 주간운용사 평가 후 자금을 예치 또는 환매 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산운용지침 제8.1조에서 규정한 직접운용의 경우
2. 업무개시 1년 이내의 신규 주간운용사인 경우(기존 주간운용사 예치 원금의 50% 미만 예치 가능)
3. 제안에 참여한 주간운용사가 1개 이하인 경우
4. 최근 1년 이내에 주간운용사 평가실적이 존재하는 경우(기존 평가결과 준용)
5. 위험관리, 유동성부족 해소 또는 자산배분기준 준수 등을 위해 환매가 필요한 경우
6. 주간운용사의 기금관련 제규정 위반 또는 서비스의 현격한 저하 등 기금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7. 기타 평가 및 배분기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3장 금융기관의 관리

제11조(금융기관의 관리) ① 진흥원은 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과 건전성, 자산운용 과정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자산을 운용 중인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과 건전성 등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점검의 강화, 담보의 확보, 채권의 보전, 예탁금의 회수, 계약의 해지나 그 밖에 운용 자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외부위탁기관에 대해서는 매월 운용계획 및 성과, 편입자산 내역, 위험관리, 관련 법규 및 계약 준수 여부, 담당 운용 매니저 변동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 받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연기금투자풀에 운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험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험관리기준에 따른다.

제12조(위반사항 발생 시 조치 및 거래제한) ① 진흥원은 점검결과 금융기관에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즉시 위반사항 해소를 요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② 진흥원은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 「금융기관 규정위반에 대한 대응조치」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산운용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제13조(외부위탁기관의 사후관리) ① 진흥원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외부위탁기관의 운용성과, 위험관리, 계약내용 준수 등에 대해 분기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외부위탁상품의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별표 12의 「외부위탁기관 사후관리 조치 기준」에 따라 위탁자금 조정, 위탁 중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만기도록 상품의 관리) ① 진흥원은 금융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기에 앞서 자산배분 현황, 수입과 지출 예상금액 등을 검토하여 만기도록 상품의 재투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금융상품의 운용성과 및 지출일정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선에서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만기를 연장 할 수 있다.

② 금융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투자한도, 금융상품 및 편입 자산의 위험성, 적정 유동성, 목표수익률, 자산배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투자하여야 한다.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만기도록 전이라도 해지에 따른 손실이 적은 운용상품부터 중도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성 해소 후 남은 여유자금의 재투자시 제7조(직접투자)에 의한다.

③ 간접투자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그 성과평가 결과를 재투자 결정에 반영하여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초과수익	재투자기준
BM수익률 대비	10% 이상	기존예탁금액의 20% 추가예탁 가능
	5%이상~10%미만	기존예탁금액의 10% 추가예탁 가능
	△5%미만~5%미만	기존예탁금액 재예치 가능
	△5%이상~△10%미만	기존예탁금액의 10% 감액예탁 가능
	△10% 이상	기존예탁금액의 20% 감액예탁 가능

## 부 칙

이 기준은 2011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기준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기준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기준은 201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기준은 2015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기준은 201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기준은 2017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기준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기준은 201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기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기준은 202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기준은 202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기준은 202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자산운용 위임·전결기준(제3조제2항관련)

운용상품	1일 운용규모	결재선
수시입출식 상품(MMF 등)	-	○ 담당 → 팀장 → 본부장
직접운용 - 확정금리형 상품 - 실적형 상품 (MMT, MMW 등)	50억원 이하	○ 담당 → 팀장 → 본부장
	5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 담당 → 팀장 → 본부장 → 부원장
	500억원 초과	○ 담당 → 팀장 → 본부장 → 부원장 → 원장
위탁운용 - 실적형상품 (채권, 주식형 펀드형 등)	-	○ 담당 → 팀장 → 본부장 → 부원장 → 원장

※ 연기금투자풀 상품 위탁운용 및 만기도록 상품의 만기연장은 본부장 전결

(별표 2)

### 금융상품 선택 기준(제3조제3항관련)

기준	확정금리형 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선택 기준	○ 지출수요를 우선 고려하여 확정금리로 운용할 경우	○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 확정금리형 상품보다 유리한 기대수익률이 존재할 경우
세부 기준	○ 위험성 - (거래상대방)제4조 및 5조에서 정한 B등급 이상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 수익성 : 높은 금리 순으로 예치 ○ 유동성 : 상품 환금성 여부	○ 위험성 - (거래상대방)제6조에서 정한 B등급 이상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 (금융상품)상품유형 및 편입자산의 위험 고려 ○ 수익성 : 위험 대비 기대수익률이 높은 순으로 예치 ○ 유동성 : 상품 환금성 여부
금융 상품	○ 단기자금 : 수시입출금식 상품, 정기예금 등 확정금리형 상품 ○ 중장기자금 : 정기예금 등 확정금리형 상품	○ 단기자금 : 채권형 수익증권 등 ○ 중장기자금 : 주식·채권·혼합형 수익증권 등

(별표 3)

## 은행권 금융기관 평가기준(제4조제1항관련)

평가점수 평가항목	20점	16점	12점	8점	4점
1.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15% 이상	14% 이상 ~ 15% 미만	13%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13% 미만	12% 미만
2. 신용등급*	AAA	AA+	AA	AA-	-
3. 무수익 여신비율	0.5% 미만	0.5% 이상 ~ 1.0% 미만	1.0% 이상 ~ 1.5% 미만	2.0% 이상 ~ 2.5% 미만	2.5% 이상
4. 자기자본 이익률	평균 +30% 이상	평균 +10% 이상 ~ 평균 +30% 미만	평균 -10% 이상 ~ 평균 +10% 미만	평균 -30% 이상 ~ 평균 -10% 미만	평균 - 30% 미만
5. 총자산 순이익률	1.0% 이상	0.8% 이상	0.6% 이상	0.4% 이상	0.4% 미만
6. ESG등급**	S/A+/A등급 (5점), B+등급 (4점), B등급 (3점), C등급 (2점), D/무등급 (1점)				
7. 규정위반 이력	평가 직전 3년 이내 가이드라인 위반의 경우 건별 -5점 부과(최대 -20점), 법률위반의 경우 -20점 부과				

\* 총점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상위 평가항목의 고점자순으로 평가

\* 신용등급은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의 가장 최근의 기업 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한다.

\*\* ESG등급은 한국ESG기준원(KCGS) 평가등급으로 한다.

(별표 4)

## 은행권 금융기관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제4조제2항관련)

등급	등급배분	특정 은행별 투자한도
A	평가순위 상위 30% 이내	여유자금운용금액* 기준 30% 이내
B	평가순위 상위 80% 이내로서 A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유자금운용금액* 기준 20% 이내
C	A급이나 B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여유자금운용금액* 기준 0% 이내

\* 여유자금운용금액은 투자시점의 총 여유자산의 평잔규모

(별표 5)

## 증권회사 평가기준(제5조제1항관련)

평가항목 평 가 점 수	20점	16점	12점	8점	4점
1. 영업용 순자본비율	평균 +30% 이상	평균 +10% 이상 ~ 평균 +30% 미만	평균 -10% 이상 ~ 평균 +10% 미만	평균 -30% 이상 ~ 평균 -10% 미만	평균 -30% 미만
2. 신용등급*	AAA	AA- ~ AA+	A- ~ A+	-	-
3. 자기자본 이익률	평균 +30% 이상	평균 +10% 이상 ~ 평균 +30% 미만	평균 -10% 이상 ~ 평균 +10% 미만	평균 -30% 이상 ~ 평균 -10% 미만	평균 -30% 미만
4. 수익증권 취급수수료 수익	100억원 이상	7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5. 조정유동성 비율	130% 이상	110% 이상 ~ 130% 미만	100% 이상 ~ 110% 미만	90% 이상 ~ 100% 미만	90% 미만
6. ESG등급**	S/A+/A등급 (5점), B+등급 (4점), B등급 (3점), C등급 (2점), D/무등급 (1점)				
7. 규정위반 이력	평가 직전 3년 이내 가이드라인 위반의 경우 건별 - 5점 부과(최대 -20점), 법률위반의 경우 - 20점 부과				

\* 총점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상위 평가항목의 고점자순으로 평가

\* 신용등급은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의 가장 최근의 기업 평가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한다.

\*\* ESG등급은 한국ESG기준원(KCGS) 평가등급으로 한다.

(별표 6)

## 증권회사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제5조제2항관련)

등급	등급배분	특정 증권사별 투자한도
A	평가순위 상위 30% 이내	여유자금운용금액* 기준 30% 이내
B	평가순위 상위 80% 이내로서 A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유자금운용금액* 기준 20% 이내
C	A급이나 B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여유자금운용금액* 기준 0% 이내

\* 여유자금운용금액은 투자시점의 총 여유자산의 평잔규모

(별표 7)

### 자산운용회사 평가기준(제6조제1항관련)

평가항목 평가점수	20점	16점	12점	8점	4점
1. 간접투자기구 설정 현황	1.25조원 이상	1조원 이상 ~ 1.25조원 미만	0.75조원 이상 ~ 1조원 미만	0.5조원 이상 ~ 0.75조원 미만	0.5조원 미만
2. 단순자기자본 비율	평균 +30% 이상	평균 +10% 이상 ~ 평균 +30% 미만	평균 -10% 이상 ~ 평균 +10% 미만	평균 -30% 이상 ~ 평균 -10% 미만	평균 -30% 미만
3. 총자산순 이익률	평균 +30% 이상	평균 +10% 이상 ~ 평균 +30% 미만	평균 -10% 이상 ~ 평균 +10% 미만	평균 -30% 이상 ~ 평균 -10% 미만	평균 -30% 미만
4. 운용보수 수익	200억원 이상	15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5. 자산운용 전문인력	20인 초과	20인 이하	15인 이하	10인 이하	5인 이하
6. ESG등급*	S/A+/A등급 (5점), B+등급 (4점), B등급 (3점), C등급 (2점), D/무등급 (1점)				
7. 규정위반 이력	평가 직전 3년 이내 가이드라인 위반의 경우 건별 - 5점 부과(최대 -20점), 법률위반의 경우 - 20점 부과				

※ 총점 기준 동점자 발생 시 상위 평가항목의 고점자준으로 평가

\* ESG등급은 한국ESG기준원(KCGS) 평가등급으로 한다.

(별표 8)

### 자산운용회사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제6조제2항관련)

등급	등급배분	특정 자산운용회사별 투자한도
A	평가순위 상위 20% 이내	여유자금운용금액* 기준 30% 이내
B	평가순위 상위 50% 이내로서 A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유자금운용금액* 기준 20% 이내
C	A급이나 B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여유자금운용금액* 기준 0% 이내

\* 여유자금운용금액은 투자시점의 총 여유자산의 평잔규모

(별표 9)

외부위탁기관 선정기준(제9조제3항관련)

평가항목	평가점수		배점	배점방법		
정량 평가	운용유형상품의 초과수익률	20점		○ 제안사 순위기준으로 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배점		
	운용유형상품의 수탁고	10점				
	제안수수료	10점				
	연기금 운용경험	10점				
	정보비율	10점				
정성 평가	운용	운용조직·전략	10점	탁월(10점) 우수(8점) 양호(6점) 보통(4점) 미흡(2점)		
		운용 프로세스	10점			
	관리	위험관리체계· 관리방안	10점			
		컴플라이언스	10점			
가·감점	ESG 관련 운용 여부		○ ESG 관련 금융상품 운용 시 +5점 부여			
	감독기관 제재 이력		○ 평가 직전 3년 이내에 금감원, 금융위, 감사원 등 감독 기관 제재 이력에 따라 건별 - 5점 부과(최대 - 20점)			

(별표 10)

### 연기금투자를 주간운용사 평가 및 배분기준(제10조2제1항관련)

#### 1.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방법				
정량 평가 (70)	운용 실적	절대 성과 (BM대비 초과 수익률*)	30	30% 이상 (30)	20% 이상 (25)	10% 이상 (20)	0% 이상 (15)	0% 미만 (10)
		상대 성과 (운용사간 상대 수익률)	10	1위 (10)	2위 (5)	-		
	위험 조정 수익률	샤프지수	10	1.25 이상 (10)	1.00 이상 (8)	0.75 이상 (6)	0.50 이상 (4)	0.50 미만 (2)
		정보비율	10	1.00 이상 (10)	0.75 이상 (8)	0.50 이상 (6)	0.25 이상 (4)	0.25 미만 (2)
	제안수수료		10	4bp 이하 (10)	6bp 이하 (8)	8bp 이하 (6)	10bp 이하 (4)	10bp 미만 (2)
정성 평가 (30)	운용 및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20	탁월 (20)	우수 (16)	양호 (12)	보통 (8)	미흡 (4)
	지원체계(자문, 교육 등)		10	탁월 (10)	우수 (8)	양호 (6)	보통 (4)	미흡 (2)
가감점	ESG 관련 운용 여부		○ ESG 관련 금융상품 운용 시 +5점 부여					
	계약 및 규정 위반 이력		○ 평가 직전 3년 이내 계약 및 규정 위반의 경우 건별 - 5점 부과(최대 - 20점)					

\* BM대비 초과 수익률 :  $\frac{\text{운용수익률} - \text{기준수익률}}{|\text{기준수익률}|}$

※ 평가대상은 동일 세부유형 금융상품(MMF를 제외한 기타 단기금융상품은 미 평가)으로 하며, 대상기간은 최근 1년(전월말 기준)

#### 2. 배분비율

점수차 구간	비율(%)		비고
	A주간운용사	B주간운용사	
A-B > 20	100	0	허용범위 ±15%
20 ≥ A-B > 10	75	25	허용범위 ±15%
10 ≥ A-B > -10	50	50	허용범위 ±15%
-10 ≥ A-B > -20	25	75	허용범위 ±15%
-20 ≥ A-B	0	100	허용범위 ±15%

\* 기존자금 환매시에는 (100-비율)로 적용, 100억원 이하일 경우 배분비율 적용제제 가능

(별표 11)

## 금융기관 규정위반에 대한 대응조치(제12조제2항관련)

구분	발생 횟수	조치사항
가이드라인 위반 (신용등급, 만기초과 등)	2회	<input type="radio"/> 사유서 제출
	3회	<input type="radio"/> 거래 금융기관 제외(1년 이내/자산운용실무협의회)
	4회	① 자금회수 검토(자산운용실무협의회) ② 위원회 보고 ③ 거래 금융기관 제외 기간 연장
법률위반 (자전거래 등)		① 사유서 제출 ② 거래 금융기관 제외(2년 이상/자산운용실무협의회) ③ 자금회수 검토(자산운용실무협의회) 및 위원회 보고 ④ 필요 시 행정절차 진행(분쟁민원 등) <p style="text-align: center;">※ 법률위반에 대한 적용범위는 운용중인 상품에 한정한다.</p>

(별표 12)

## 외부위탁기관 사후관리 조치 기준(제13조제2항관련)

평가기준 조치사항	운용기관이 1개인 경우		운용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1분기	2분기 연속	3분기 연속
운용성과 BM* 하회	○ 개선계획서 제출	○ 개선계획서 제출	
또는 사후관리 평가 결과 미달	○ 개선계획서 제출 ○ 위탁자금 최대 30% 회수 및 위탁운용사 추가 선정	○ 개선계획서 제출 ○ 위탁자금 최대 30% 회수 ○ 성과가 우수한 운용사로 자금 이전	
또는 법규 및 계약 위반	○ 위탁자금 100% 회수 및 위탁운용사 재선정	○ 위탁자금 100% 회수 ○ 성과가 우수한 운용사로 자금 이전 및 위탁운용사 재선정	

\* 외부위탁기관 선정 시 사전에 설정된 운용대상 자산의 기준수익률